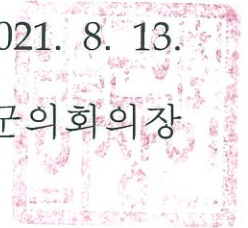


임실군의회 공고 2021 - 21호

「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“임실군의회 회의 규칙” 제 20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. 8. 13.

임실군의회 의장



1. 제안이유

가. 청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등 기본 사항(안 제1조~제5조)
- 나.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다. 청년정책기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- 라.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심사예고 : 5일

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임실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,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,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.
2. “청년발전”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,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, 고용촉진, 능력개발,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3. “청년정책”이란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, 권익증진과 청년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4. “청년단체”란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

참여 확대, 권익 증진,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5. “청년활동”이란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, 권익증진,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.

6. “청년참여기구”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,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.

7. “청년시설”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,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

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임실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

여야 한다.

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하며, 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

가.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

나.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

다.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

라.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

마. 청년의 생활안정

바. 청년 문화의 활성화

사. 청년의 권리보호

아.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

자. 청년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

차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

3. 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·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

4.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

5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청년정책업무 추진 관련 부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8조(청년정책연구 등)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,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3장 청년정책 기구

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군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
5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문화체육과장, 경제교통과장, 농촌협력과장으로 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1. 임실군의회의 의원
2.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
3.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
4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

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.

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청년위원회)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,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20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둔다.

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년과의 소통, 의견 수렴 및 전달
2. 청년문제의 발굴·조사·개선방안 모색
3. 청년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
건의
4. 국내외 청년단체·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
5. 제9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

③ 청년위원회는 군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,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.

④ 청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청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.

⑦ 그 밖에 청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행정 및 실무지원 등) ① 군수는 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등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필요시 부서별 청년정책 관련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해야 한다.

②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

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

제4장 청년정책

제12조(청년참여 활성화)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,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,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기구 설치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.

제13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창의적·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청년의 고용확대 등) ① 군수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
제15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

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6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 군수는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,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
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, 결혼, 보육, 그 밖의 생활 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.

제17조(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)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18조(청년의 권리보호 등)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19조(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)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, 청년창업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임실군 청년센터(이하 “청년센터”라고 한다)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
3. 청년의 능력개발·취업·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·지원
4.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
5.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
6. 청년정책 관련 자료·정보 집적과 공유
7. 청년의 주거 안정,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지원
8.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,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
9. 그 밖의 군수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청년정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.

④ 군수는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「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, 민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청년 시설을 설치·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

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임실에서 활동하는 19세~45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로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22조(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시·군, 관련 기관,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23조(청년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군수는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, 청년기업 등에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교육, 홍보, 인력양성
2.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
3.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
4. 고용 및 일자리, 창업지원 사업
5.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사업
6. 경제·금융·생활 지원 사업
7. 국내·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
8. 축제 등 문화·예술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등

9.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 10. 청년의 민·관 네트워크 구축
 11.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